

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8. 6. 27.(수) 10:37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 원 장
허 욱 부위원장
표철수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김석진 상임위원 (1인)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제2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서면회의 결과보고

- 제28차 및 제29차 서면회의 결과, <의결안건>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- 제28차 및 제29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7] 의결사항

가. 「방송법·전파법·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8-30-370)

○ ‘「방송법·전파법·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’에 대하여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,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등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※ 법령 개정안 주요내용

- 현행 「방송법」 상 신고제로 규정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·중단 신고, 대표자·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 신고, 휴·폐업 신고의 경우와 「전파법」 상 무선국의 폐지·운용 휴지·재운용 신고의 경우, 시청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는 ‘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’는 규정을 신설(방송법 안 제84조 제3항 및 전파법 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)
- 방송법·한국교육방송공사법·방송문화진흥회법 상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, 인가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로 간주하는 규정 도입(방송법 안 제45조제2항 신설 등)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8-30-371)

○ ‘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’에 대하여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법제처 신고제도 합리화*를 위한 일괄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기관 휴지·폐지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등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*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 없는 신고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, 국민의 민원처리 완료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

※ 법령 개정안 주요내용

- 본인확인기관 휴지·폐지 신고(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)와 관련하여, 방송통신위원회가 ‘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’는 규정을 신설(안 제23조의3제4항 신설)

다.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(2018-30-372)

-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(주)더큰나눔애틀엔, (주)엠브레인 등 2개 법인에 대해 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, 위치정보법과 관계법령 준수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라.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8-30-373)

- ‘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’에 대하여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행위무능력자 또는 파산자에 해당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8] 보고사항

가. 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」 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2018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」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현숙 재정팀장의 보고를 받고,
 - 중앙지상파방송사업자(KBS, EBS, MBC, SBS) 및 지역·중소방송사업자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로 기본징수율을 정하고 개별 방송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되,
 - 종편·보도PP는 경영상황 개선 및 매체 영향력 증가, 점진적인 징수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한 전년도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'18년 징수율을 1%에서 1.5%로 인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접수함

9]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7월 4일(수)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00)